

논 단

저 축 의 효 과

1. 의 의

1. 의 의
2. 효과론-이해득실
3. 분 류
 - 1) 노후를 위한 저축
 - 2) 자손을 위한 저축
 - 3) 법인 저축
4. 저축투자의 소득결정 이론
5. 저축관련 제 문제
 - 1) 저축성향
 - 2) 저축함수
 - 3) 저축성 예금
 - 4) 저축보험
 - 5) 저축은행
 - (1) 우편 저축은행
 - (2) 신탁적 은행
 - (3) 전업의 저축은행



이 철 상
상도전기공업(주) 대표이사

저축(貯蓄: saving)은 가끔 절약(節約)·절검(節儉)·제욕(制欲)·대망(待望)이라는 낱말로써 표현하는데, 이것은 장래의 소비에 대비하는 행동이라고 보는 해석이다. 경제학 용어로는, “소득을 다 써버리지 않고 아껴 모아둠”의 의미이다. 한 자로는 쌓을 저(貯)와 쌓을 축(蓄)을 쓰는데, 중국본토에서는 儲蓄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때 儲(저)자는 “쌓는다”라는 뜻인데, “예비로서 대비하고 있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곧 소득중에서 소비로 지출되지 않는 부분을 말하며, 저류(貯留) 혹은 저적(貯積)이라고도 한다.

보통으로 절약이라는 것은 소비를 억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나, 그것은 동시에 장래에 대비하는 것이고, 이 장래의 대비(對備)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부(富)의 축적에 대한 준비라고 하겠다.

스코틀랜드 태생의 영국경제학자 스미스(A. Smith: 1723~1790)는 절약을 극히 명백하게 자본축적과 결부시켰다. 그에 의하면, 절검은 자본증가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고 하며 (자본은 절검에 의하여 증가되고, 낭비와 비행(浪費·非行: prodigality and misconduct)에 의해 감소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같이 하여 개인 또는 사법인(私法

人)이 영위하는 경제 즉 사경제(私經濟: private economy)의 미덕(美德)으로서의 절약과 국민경제적인 현상으로서의 자본축적과의 결합은 그후 오늘날까지 줄곧 진리로 간주되어 온 것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시니어(N. W. Senior: 1790~1864)에 의하면 제욕(制欲)은 <자기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을 생산적이 아닌것에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거나, 혹은 즉시적 성과의 생산보다도 장래적 성과의 생산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인간행위를 표현하는 명칭이다>라고 그의 명저《경제학 강요》에서 갈파 하였다. 환언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제욕이라는 개념은 절약에 의한 자본형성의 행위를 주관적·심리적 측면에서 희생고통으로 본 것이다. 이와같이 제욕을 노동 및 자연과 더불어 제3의 생산요소로 정의하고, 노동에 대한 임금, 자연에 대한 지대(地代)가 지불되는 것과 병행하여 제욕에 대하여 지불되는 것이 이자라고 한 것이다. 이 제욕이라는 개념 대신에 영국신고전학파(新古典學派)의 창시자인 마샬(A. Marshall: 1842~1924)에 이르러 그의 금융적인 어감대신에, 대망(待望: waiting)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썼다. 소위 대망설(waiting theory)의 주장이 그것이다. 이 대망이라는 것은 장래를 위하여 행하는 현재 쾌락의 희생이고 소비의 연기이다.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대망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람은 대망하고 저축하지 않으면 안되고, 장래를 위하여 현재를 희생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마샬은 그의 저서 《경제학 원리》에서 말하였다. <인간본성의 현상에 있어서는 보상(報償)이 없으면, 많은 돈을 저축할 사람은 적으므로 우리는 자본이자를 물질자원의 향락의 대망에 따르는 희생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하였다. 이와같이 저축은 사(私)경제적 미덕으로서, 자본축적의 원인이 되므로, 사회적으로도 미덕이

라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저축관에 대해서는 경제이론면에서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J. M. Keynes: 1883~1946)에 의하여 큰 비판을 받았다. 케인즈에 의하면, <저축은, 다만 소비를 하지 않으려는 결의에 불과하며, 명확한 인식은 곧 저축하려고 하는 결의를 기준으로 하여 생각하는 것 보다도 오히려 소비하려고 하는 또는 소비를 억제하려고 하는 결의를 기준으로 하여 생각할 때, 가장 근접한 거리에 도달할 수가 있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하여 만일 저축으로서 남은 잉여의 자금이 다만 퇴장(退藏: private hoarding)되어 버리는데 불과하며(流動性選好의 작용), 그것은 반드시 자본축적의 원천으로서의 저축으로는 되지 않을 것인지도 모른다. 이 저축자금중에 퇴장되는 부분이, 즉 보장(保藏)에 의한 저축형태이다. 이 주장의 중점은 저축이 생산행위에 수반되는 일이 없이 보장될 것 같으면, 사회적으로는 저축은 불임적(不妊的 barren)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데 있다. 이 보장이라는 개념은 화폐보유의 현실의 증가를 의미한다면, 이 개념은 불완전한 것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화폐의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결의와도 관계가 있으므로, 제2의 시간선택에 결합하여 그것을 정의하면 더욱 명확하게 될 것이다. 케인즈에 의하면 <보장이라는 개념은 유동성선호(選好)의 개념에 대한 제일차적 근사치(近似值)로 보아도 좋다. 만일 보장 대신에 보장성향(保藏性向)이라고 하면, 결국 그것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와같이 이자가 대망내지 자본의 생산성에 대한 보수라고 하는 사고방식 대신에, 그것은 유동성을 방기(放棄)하는 희생에 대한 보수라고 하는 유동성설(liquidity theory)의 사고방식이 발생하였다. 이는 그의 배후에 이와같은 저축관

의 차이가 존재하는 까닭이다. 만일 저축이 유동성 선호(liquidity preference)의 작용에 의하여 화폐의 형태로 보장되어 투자화하지 않으면, 그만큼 자본금의 축적은 억제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스미스 이래 영국의 경제학자 리카도(D. Ricardo : 1772~1823)로부터 야살·빅셀(J. G. K. Wicksell)에 이르기까지 계승된 바 있는 저축은 사회적으로도 미덕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사고방식 대신에 저축은 악덕이라고 보는 사고방식이 성립한다. 물론 이와같은 사상은 결국 케인즈 이전에 이미 중상주의자나, 맬서스(T. R. Malthus : 1766~1834)·홉슨(J. A. Hobson : 1850~1940) 등에서도 찾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에 체계를 세운이는 결국 케인즈였다.

2. 효과론 - 이해득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저축관변천의 배후에 사실은 <자본주의 경제사회의 변모>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자본주의의 발전기에 있어서의 저축은 곧 투자되어 자본축적을 촉진시켰으므로 <미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정체기(停滯期)에 들어서면서 부터 저축은 투자되지 않고 보장되어 그만큼 생산을 저해하므로 악덕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를 이와같이 자본주의 경제를 기준으로 하여 너무나도 명확하게 분단(分斷)해 버리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조금 지나친 점이 있다고 하겠다. 자본주의의 경제에는 발전기와 정체기의 어느단계계를 막론하고 호황(好況)과 불황의 파동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저축은 불황기에 그만큼 구매력이 감퇴되어 생산을 저해하므로 악덕이 되겠지만 다른 한편에 있어서 호황기에는 저축은 구매력을 흡수하여 인플레이션을 저지하므로 미덕으로 된

다고 할 수 있다. 또 자본주의 국가중에는 선진국과 후진국이 있다. 즉 선진국에서의 자본주의는 정체화의 경향에 있으므로 저축은 악덕으로 되는 경향이 있지만, 후진국에 있어서의 저축은 자본축적의 전제가 되므로 미덕이 된다.

이와같이 경제의 국면과 경제의 발전단계에 따라서 저축이 미덕인가의 여부는 착잡해지며, 과연 저축이 미덕인가의 여부는 충분한 논리적인 기초위에서 판단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의 기초조건은 무엇을 예증(例證)하는 의미도 겸하여 다음에 저축의 작용면에서 그의 여러 개념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저축은 자본축적에 필요한 조건이 되기는 하지만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 사람이 저축을 하면 할 수록 많은 자원이 소비에의 충당에서 해방된다. 그래서 그것을 자본의 축적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에는 현실적으로 보아서 두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첫째로 수요부족 때문에 생산능력이 완전히 발휘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을 때에는 저축증가는 수요를 더욱더 감퇴시키고 자원을 더욱 유향(遊休)의 상태로서 낭비시킨다. 둘째로 생산이 이용가능한 자원에 의하여 계획된 최고한도까지 추진되고 있을 때에는 소비를 절하(切下)하는 이외에는 생산을 증대시킬 방법이 없다. 후자의 경우에는 저축은 자본증가의 전제로 되나, 전자의 경우에는 저축은 자원을 쓸모없이 유향상태로 방치하게 된다. 소위 말하는 강제저축(強制貯蓄 : involuntary saving, forced frugality / saving)의 개념은 이 후자의 경우에 한하여 성립되는 개념이다. 생산능력이 이미 최고한도에 도달하고 있을 때, 은행의 신용팽창을 수단으로 하여 행하여지는 기업의 생산재에의 추가수요는 물가를 상승하게 할 것이다. 물가의 등귀는 소비자에 대하여 소비를

억제시키고, 소비의 절약을 강요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하여 기업자는 추가신용을 수단으로하여 소비로부터 해방된 자원을 생산수단에 전용하고, 가일층 우회적(迂廻的)생산(roundabout production)에 진출할 수가 있다. 우회생산은 생산수단, 즉 도구나 기계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이용하여 소비재를 생산하는 방법인데, 대량 생산이 능률적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소비자에게 절약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강제저축이라고 하며, 소비자가 자진하여 행하는 자발적 저축과 엄연히 구별된다. 이와같이 강제적으로 절약된 자원의 기업자에 의한 투자에의 전용은 곧 생산을 확대시키게 된다. 이상의 강제저축의 개념은 미제스(L. E. von Mises)와 하이에크(F. A. von Hayek)등에 의한 화폐적 경기변동론에 사용되고, 또 슈페터(J. A. Schumpeter : 1883~1950)의 발전이론에도 채용되었다. 그러나 이 개념이 완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생산능력이 최고 한도에 도달한 단계 이후에 한하여서만 사용할 수가 있다. 이와 반대로 생산능력과잉의 상태하에서는 로버트슨(D. H. Robertson : 1890~1963)이나 케인즈류(流)의 불임(不妊) 저축이라고 하는 반대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즉 불황기에 있어서 저축이 이루어져도 그것이 투자를 수반하지 않는다면 소비재에 대한 수요는 그만큼 감소하고 소비재가격은 하락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중(二重)의 현상에 의하여 저축행위를 불임적으로 만드는 결과가 된다.

첫째로 소비재가격의 하락은 저축자이외의 사람들에게 종래와 동일한 화폐액의 지출에 의하여 가격하락의 분량만큼 실질적 소비의 양을 증대시킬 수 있게 한다. 둘째로 저축자는 개인으로서 그의 저축액만큼이나 부유하게 되지만, 소비재 생산자는 소비재가격의 하락에 의하여 그만큼 수

입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축은 사회의 부(富)가 증가되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케인즈의 소위(이중이전(二重移轉)) 즉, 저축자로부터 소비자 일반에의 소비의 이전과, 소비재 생산자에게서 저축자에의 부(富)의 이전을 수반하는 데에 불과한 것이다. 이리하여 <과잉저축>은 불임적이되고 유산(流産)으로 끝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저축은 저축되지 않은 것>이라고 영국 경제학자 로버트슨(D. H. Robertson : 1890~1963)은 주장한다. 이와같이 저축의 미덕이든지 혹은 악덕이든지, 또는 강제저축이나 불임저축이 성립될 조건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생산능력, 곧 이용의 완전성·불완전성의 조건에 규제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유의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저축의 작용과정에 있어서의 여러개념으로서는 상술한 것 외에 분석수단의 견지에서 중요시하는 것이 있다. 소위 사전저축(事前貯蓄 : extant saving)과 사후저축(事後貯蓄 : ex post saving)의 개념이 바로 그것이다. 즉 개인에 의하여 의도되고 계획된 저축이 사전저축이며, 또 개인의 의도여하를 막론하고 결과로서 사회적으로 실현된 저축이 사후저축이다. 이것은 경제의 과정을 분석하는 데에 즈음하여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라든지 시간의 요소를 도입하여 저축의 사전과 사후의 가치를 대조시켜서 고찰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물론 이 분석은 저축의 측면 뿐만 아니라 투자의 측면에도 사전과 사후의 수치(數値)를 고려하고, 이것을 저축에 관련시키지 않으면 아니될 것은 상술한 바에 의하여 명백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의도된 투자와 저축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전적 제량(諸量)은 경제행동의 결의표(決意表 : schedule)라고 해석하고, 사후적 제량을 현실에서 측정되는 가측치(可測値 : observables)라고 해석하는 것인데, 이와같은 시간적 과정에 있

어서의 저축과 투자의 운동 및 양자의 관계가 경제의 〈변동과정〉을 묘사하는 것이 된다.

3. 분 류

저축의 동기(動機)에 의한 분류는 다만 이를 나열하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 있어서 저축의 공급움직임을 분석하며, 이것을 경제성장에 필요한 저축의 사회적 필요량과 대조하는데에 큰 의의가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영국의 경제학자 해로드(R. F. Harrod: 1900~1978)가 시도한 분류에 따라서 설명하겠다. 그의 분류에 의하면 저축은 우선 개인저축과 법인저축으로 크게 분류된다. 개인저축이라는 것은 개개의 경제주체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인데, 이것은 다시 그의 동기에 의하여 노후(老後)를 위한 저축과 자손을 위한 저축으로 분류된다.

1) 노후를 위한 저축

노후를 위한 저축(saving for old age)이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생애를 통하여 자기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저축을 말한다. 즉 이것은 수입을 잃은 노후의 필요에 대비하여 현재의 시점(時點)에서 할인한 소비의 전부효용(全部效用) 즉 총효용(總效用: total utility)을 극대화(極大化) 하려고 그 일생을 통하여 소비배분을 행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저축이다.

2) 자손을 위한 저축

다음에 자손을 위한 저축(saving for posterity)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유산으로서 남겨두기 위하여 기도(企圖)하는 저축이다. 이후, 자손들도 그와 같은 소득을 얻을 것이므로 이 저축의 동기는 소비의 배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자라고 하는 형태에 있어서 자산으로부터 규칙적인 소득을

얻으려는 데에 있다. 물론 각 개인은 이상의 두 종류의 저축을 실제로 명확히 구분하여 행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태여 구별하는 이유는 개인의 여러 저축동기와 그것들에 영향(影響)을 미치는 제인자(諸因子)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에 그것이 쓸모가 있고 유용한 까닭이다. 기타의 다른 종류의 개인저축도 있는데 그것은 위신과 세력을 위한 저축으로 간주된다. 이것은 소비배분을 위한 것이나, 이자취득을 위한 것도 아니고, 큰 자산을 소유하는 것에 의하여 얻어지는 위신과 세력의 한계효용을 소비의 한계효용과 균형(均衡: balance) 시키려는 의도로서 행하여지는 저축이다.

3) 법인저축

상기한 개인저축과 구분해야 할 것은, 소위 법인저축(corporate saving)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소득의 흐름을 유리하게 조정하기 위한 개인저축과는 다른 것인데, 기업이 차입(借入)에 따르는 이자비용의 부담으로부터 면제되며, 사업의 확장을 꾀하려고 자기자본을 준비하기 위하여 행하는 저축이다. 좀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법인저축은 기업이 자기금융을 예상하여 성립되는 저축이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법인저축은 개인저축과는 전혀 그의 동기를 달리하는 것이나, 그것은 개인저축에 가산해야 할 제3의 저축부분은 아니다. 그런데 법인 저축은 주주나 기업자에 있어서 개인저축으로 되어 나타나는 까닭은 이것은 다만 준비금의 적립과 같이 개인저축에 해소시킬 수는 없는 것이었다. 이 부분이 법인유보(法人留保) 내지 순(純) 법인저축(surplus corporate saving)이고, 제3의 저축부분으로서 사회저축액 가운데에 가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근대 산업사회에 있어서는, 법인유보는 모든 저축중에서도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선진자본주의 제국에 있어서는 총저축중의 1/3 내지 2/3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자본축적의 전제가 되는 이상의 각종 저축이 소득량과 이자율의 변동에 수반하여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관한 저축이론의 전개에 있는 것이다. 이자율의 변화에 대한 반응에 관하여서는 상기한 여러가지 저축중, 노후를 위한 저축은 플러스(+), 자손을 위한 저축은 불명(不明), 법인저축은 마이너스(-)의 감응을 제시한다고 본다.

그러나 인구(人口)·기술(技術)·생산력(生産力)과 같이 더욱 중요한 기본적 여건(基本的 要件)의 변화를 고려한다 할지라도, 현실의 이자율의 움직임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저축액의 공급을 보충하지 않으며, 소득의 극대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다. 물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는 좀더 상세한 분석이 필요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개인저축의 이론에 관하여서는 많은 학자나 논자들에게 의하여 다각도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법인유보에 관하여 근대 이론은 아직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원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법인유보는 소위 내부저축문제로서 자본축적의 중요한 직접적인 계기로 되어 있는 현상에 비추어 볼 때에, 이 점이야말로 현대 이론에 있어서 아직 좀더 극명하게 탐구해야 할 하나의 미완(未完)의 문제점(問題點)으로 남아 있다고 하겠다.

4. 저축투자의 소득결정이론

저축투자(貯蓄投資)의 소득결정이론(所得決定理論: saving-investment theory of income determination)은 케인즈(J. M. Keynes: 1883~1946)가 내세운 국민소득 이론이다.

일정기간의 국민소득은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는 유효수요(有效需要: effective demand) 크기에 결정되지만, 소득에서 소비를 뺀 차액의 저축은 전부 투자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투자가 저축을 하회할 때 국민소득수준은 저하되고, 소득이 감소되면 따라서 저축도 감소된다. 이리하여 소득은 저축이 투자와 같아지게 될 때까지 저하하고, 반대로 투자가 저축을 상회할 때에는 소득은 저축이 투자와 같아질 때까지 상승한다. 결국 투자는 투자와 같은 저축이 생기는 점까지 국민소득 수준을 변화시킨다. 이것이 저축투자의 소득결정 이론으로, 이자율이 투자와 저축을 균등화시킨다고 하는 고전학파의 이론을 부정하였다.

5. 저축관련 제문제

1) 저축성향(貯蓄性向)

한나라의 전체로서의 저축은 소득에 의존한다고 상정하는 경우, 소득내지 가처분(可處分) 소득(disposable income) 가운데서 저축되는 비율을 말한다. 소득내지 가처분 소득의 증가분에 대한 저축증가의 비율을 한계저축성향(限界貯蓄性向: marginal propensity to save)이라고 한다. 소득가운데서 소비되지 않는 것이 저축이므로 소비성향과 저축성향의 합계는 1이 된다.

2) 저축함수(貯蓄函數)

저축의 크기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를 함수로 나타낸 것이다. 저축은 소득중 소비되지 않은 부분이므로(저축 = 소득 - 소비), 저축 함수와 소비함수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가장 간단한 저축함수는 저축이 소득의 함수로 나타나는 것으로 저축을 S, 소득을 Y로 하면, 그것은 $S=f$

(Y)로 표시되며, 보통 Y가 커지면, 그에 따라서 S도 커지는 관계에 있다고 되어있다. 또한 저축에 영향을 주는 변수(變數)로서, 최근의 최고소득수준, 자산(資産)등이 도입되는 수도 있다.

3) 저축성 예금(貯蓄性 預金)

투자의 한 형태로서 보유하는 은행예금이다. 일정한 기간동안 은행에 예치한다는 의미에서 정착성예금(定着性預金)이라고 불리우며, 예금주(豫金主)가 자기의사대로 언제나 예금을 인출(引出)할 수 있는 요구불예금(要求拂預金: sight deposits)과는 구별된다. 현재 한국에서는 정기예금, 통지예금, 어린이저금, 국민저축 조합예금 등의 정착성예금이 있으며 각각 소정의 이자가 지불되고 있다.

4) 저축보험(保險)

3년·5년 등 보험기간을 단기(短期)로 하고, 저축을 중심으로 하는 생존보험(生存保險)이다. 보험료는 연령에 관계없이, 보험금액에 의해 결정되며, 월불집금(月拂集金)을 균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정 전염병, 불의의 사고에 의한 사망의 경우에 소정의 보험금에서 지불되므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순수한 생존보험이라고는 할 수 없다.

5) 저축은행

일반서민의 영세(零細)한 저축자금을 흡수하여 안전하고 확실하게 운용하며 이식(利殖)하는 금융기관이다. 이러한 은행(銀行)의 자금운용은 어떠한 국가에 있어서도 특별한 법적제한과 감독을 받고 있다.

저축은행은 대개 3형태로 분류되는데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경영하는 것으로 우편저축은행(postal savings bank)등이 그것이다.
-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상호조직으로 자본금이 없고 은행자금은 순전히 예금으로 구성되며 수익중에서 경비등을 공제한 잔액을 모두 이자로서 분배하는 신탁적(信託的)인 은행이다. 미국의 상호저축은행(mutual savings bank)과 영국의 신탁저축은행(trustee savings bank)등이 여기에 속한다.
- (3) 영리적인 주식회사 조직으로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주식저축은행(stock savings bank)이라 부른다. 한국에는 현재 전문(專業)의 저축은행은 없다.

전안

광 고 게 재 안 내

월간 "전기외안전"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잡지로서 국내전기용품제조업체는 물론 관련기관, 단체, 학교등에 무료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저렴한 광고비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본지에 광고게재를 권해 드립니다.

MONTHLY JOURNAL
月刊 電氣와安全
ELECTRIC SAFETY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19
한국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 연구개발부
TEL : (02) 579-3291~5
FAX : (02) 578-3640